#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지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518

발의연월일: 2025. 4. 1.

발 의 자: 박지혜·채현일·이훈기

오기형 • 박지원 • 허 영

송재봉・김 유・오세희

박균택 • 박해철 • 정진욱

이재관 • 박정현 • 이소영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현행법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범위에 탄소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, 규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체계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

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 분석서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도록 하여,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(안 제7 조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51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4호 중 "분석"을 "분석(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18호에 따른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규제영향분석부터 적용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)	제7조(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)
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	①
를 신설하거나 강화(규제의 존	
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. 이하	
같다)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	
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	
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	
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	4
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	
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	분석
<u>석</u>	(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
	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<u>」</u>
	제2조제18호에 따른 탄소의
	사회적 비용을 포함한다)
5. ~ 12. (생 략)	5. ~ 1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